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 15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1. 1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1999. 1. 21) 상정 질의, 답변

○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999. 3. 5)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가. 제정이유

○ IMF관리체제 이후 내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들이 영세성과 경험부족으로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입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주도의 수출입 지원 또한 한계가 있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입 대행, 공익성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자율성을 지닌 지방공기업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나. 주요골자

○ 법인격 및 회사명칭(안 제2조) :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 자본금(안 제5조) : 100억 원

※ 부천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함.

○ 주요사업추진(안 제6조)

- 공산품의 수출입업 및 국내외시장 개척
- 화훼, 특용작물의 국내외시장 개척
- 회사의 외자유치 및 투자
- 기타 부천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 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안 제8조) :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 유경험자

○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안 제1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

○ 경영평가(안 제12조) : 공인회계사

○ 보고 및 감사 등(안 제13조) : 시의회 보고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무역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무엇이죠? ○ 투자예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기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 설립자본금이 30억원인데요, 부천시 출자금액은 얼마죠? ○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용역의뢰나 내부적으로 충분한 타당성검토가 있었습니까? ○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중요하여 지원채용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을 추가 삽입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 전북무역이나 경남무역은 주요 수출품목이 농·축·수산물이고 우리 부천시의 경우는 공산품으로서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은? ○ 무역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부천시 관내 중소 기업의 현황에 대한 완벽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은? ○ 무역회사 설립운영시 공익성에 우선을 둘 것인지 또는 수익성에 우선을 둘 것인지 여부는? ○ 안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의거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파견공무원의 수와 직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업의 대행과 지역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 부천시 출자금액은 14억 7000만원이고, 공모주가 15억 3000만원입니다. ○ 용역의뢰는 없었고, 내부적으로는 타시·도 무역회사와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타당성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 ○ 직원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 전북, 경남무역 뿐만 아니라 타시·도의 무역회사와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일까지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무역회사 설립시 우리 무역회사를 이용하겠다는 업체는 조사된 업체 3,368개 업체 중 1,926개 업체입니다. ○ 무역회사 운영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인 점을 고려하여 공익을 바탕으로 한 수익 우선 위주로 운영할 것입니다. ○ 파견공무원의 수는 3명으로 계획중이며 관리부장급은 5급사무관으로 하고 그 외의 직원은 6~8급 중 직책에 부합하는 실력자를 선발하여 파견할 계획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은 무역회사와 업무가 중복되어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출대금의 미회수 우려성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은 상담, 지원, 또는 정보를 수집, 이를 기업에 제공하는 등 공익 측면이 강하여 무역회사 설립 초기기에 흡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도약의 바탕을 마련한 후 흡수통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거절 등 신용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험 등에 관한 연구,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조례제정의 타당성에는 공감함.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요지

- 해외세일즈단과 외자기술유치단을 무역주식회사와 통합하는 조항에 대해 부칙으로 삽입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부칙보다는 심사보고서에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외세일즈단장, 무역상담소장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조례제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견해를 청취한 바 있음.
- 지난 2월초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전북무역 등 타시·도 무역회사 견학을 통해 우리 시 무역회사 설립시의 문제점과 개선점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음.
- 또한 99. 3. 3일 10시부터 12시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위원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전북·경남무역 방문결과 도출된 우리 시 무역회사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협의를 거친 바 있음.
- 현재 운영중인 부천시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 업무와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동조례에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설립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회사의 안정적 발전을 위함과 아울러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우려하여 무

역회사 설립 후 1년 이내에 외자기술유치단과 해외세일즈단을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조례에 흡수하는 조건으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를 의결하였음.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 107 호
의결년월일	99. 3. 9 (제69회)

제출년월일 : 1999. 3. 8

제출자 : 기획재정위원장

□ 수정이유

-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안정적 발전을 통해 설립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경영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절실하여 동조례안 제8조제1항에 “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를 삽입하였음.

□ 주요골자

- 안 제8조제1항에 “직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를 삽입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사장 및 <u>임원</u>의 자격요건과 책무)</p> <p>①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 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시견이 있는 <u>자로 한다</u>.</p> <p>②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u>임원</u>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 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p>	<p>제8조(.....<u>임·직원</u>.....)</p> <p>①.....</p> <p>.....<u>자로 하고, 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u></p> <p>②.....<u>임·직원</u>.....</p>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수정안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및 제목 및 동조 제2항중 “임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자로 한다”를 “자로 하고, 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로 한다.

[수정안 포함]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입업의 대행과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시내로 한다.

②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회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 ①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보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시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산품의 수출입업 및 국내외시장 개척
2. 화훼, 특용작물의 국내외시장 개척
3. 구상무역으로 수출시장 판로 확장
4. 외자유치 및 투자
5.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점
6.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수출입업 및 부대사업
7. 무역거래 알선 및 대행업
8. 수출입 물품의 부대사업(운송, 하역, 통관 등)

9. 물품 매도판매업
10. 수출입 상품의 임가공, 수집, 위탁 및 제조 판매업
11. 지역개발 수익사업
12. 기타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

제7조(시의 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이 행사한다.

제8조(사장 및 임·직원의 자격요건과 책무) ①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및 통상업무에 상당한 경험과 의견이 있는 자로 하고, 직원은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

②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직원은 상법 제399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지방비의 부담) ①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익상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시)가 요구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2. 회사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제1항 각호의 비용에 관하여 회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경영평가)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경영상황에 관한 필요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